

환경권과 경제성장의 함수에 관한 헌법적 고찰

이 창 훈*

차 례

- I. 서론
- II. 환경권의 보호영역과 법적 성격
- III. 환경권과 경제적 기본권의 관계
- IV.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 V. 결론

【국문초록】

환경정책기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과 경제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반면, 환경 관련 법률을 비롯한 규범적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우려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상 환경권과 경제적 기본권의 관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법이론 구성과 법해석을 전개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근본적 차원에서 독자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자연환경에 국한하여 좁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환경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환경권과 경제적 기본권이 충돌되는 사례를 검토하고 긴장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방향을 도출하여야 한다.

나아가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범적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환경규제에 대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함으로써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개발허가와 환경허가의 통합을 통해 환경권과 경제적 기본권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셋째, 환경법제와 에너지법제의 정합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범적 전제조건들을 법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면,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고리를 형성함으로써 사회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와 원동력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I. 서 론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소 후퇴하는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회의가 성과 없이 마무리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폴란드에서 개최되었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축소하는 선진국에 대하여 개도국을 중심으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¹⁾

주요국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소극적 입장으로 선회하는 배경에는 경제적 여건의 악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의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재정 여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환경문제에 투자를 기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 여건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건으로서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이는 결국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환원된다. 그런데 최소한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환경보호, 환경침해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 것이므로, 양자의 관계는 조화의 관점에서 논의 될 수밖에 없다. 2006년 영국에서 발간된 '스턴보고서(Stern Review)'는 환경과 경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경제의 20%가 와해될 수 있지만 세계 GDP의 1%를 온실가스 감축비용으로 투자한다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이를

1) 일본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2005년 대비 3.8% 감축하겠다고 밝혔으며, 호주는 탄소 정책을 손보는 등 감축 목표치를 내릴 것이라고 시사하였으며, 캐나다는 이산화탄소 감축을 약속한 교토협약에서 탈퇴한 바 있다.

통해 저탄소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고용을 증대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²⁾ 즉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한다면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조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환경보호를 위해 국가의 예산을 어느 정도로 투입할 것인가, 기업을 비롯한 국민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경제적 기본권의 제한을 어느 정도로 감수할 것인가,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시장에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할 것인가 등과 같은 문제들은 국민의 활발한 참여와 토론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규범적 차원에서는 헌법상 환경권과 경제적 기본권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화로운 법이론과 해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양자의 관계를 평면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그 규범적 함수관계를 규명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위한 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환경권의 보호영역과 법적 성격을 검토해 보고(II), 학설 및 헌법재판소·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헌법상 환경권과 경제적 기본권의 관계를 분석한 다음(III),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IV).

II. 환경권의 보호영역과 법적 성격

1. 환경권의 보호영역

환경권이란 건강하고 체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환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자연적 환경'으로 좁게 보는 견해도 있는 반면, '사회적·문화적 환경'으로 넓게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환경의 의미에 대한 시각

2) Nicholas Stern, *Stern Review: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에 따라 환경권의 보호영역의 광협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결국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환경정책기본법」(이하 “환경정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서는 환경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호에서는 자연환경을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동조 제3호에서는 생활환경을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따르면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에서는 사회적·문화적 환경이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환경을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으로 좁게 보는 견해는 환경권의 논의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환경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려면 자연환경에 국한시켜야 하고, 사회적 환경을 포함할 경우 다른 기본권과의 구별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³⁾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적 강제력의 개입은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 자연법칙에 의하여 순환되는 자연 그 자체가 훼손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의 행위를 통제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한다.⁴⁾ 또한 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환경권의 내용을 구체화한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환경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환경을 환경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⁵⁾

헌법재판소도 ‘야생동·식물보호법제16조제3항 위헌소원’ 사건에서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동·식물계를 비롯하여, 공기, 물, 토양, 기후, 경관 등 자연적 생활근거, 즉 자연환경에 대한 권리로서 환경권을 기

3) 홍성방, 헌법학(중), 박영사, 2010, 302면.

4) 박진완, 환경권과 자연보호: 환경기본권의 기본권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검토, 환경법연구, 제30권 제3호, 2008, 18면.

5) 김형성, 헌법상 환경규정의 규범적 의의, 환경법연구, 제26권 제4호, 2004, 117~118면. 다만, 일반적인 헌법해석론으로 환경을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인공환경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생활환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본권의 하나로 명시하고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환경보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⁶⁾고 판시하여 헌법상 환경을 자연환경으로 좁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에 대한 정의조항은 그 내용상 환경 자체의 개념을 직접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불완전한 표현에 해당하고,⁷⁾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 폐적한 주거생활권을 보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 헌법은 환경의 개념을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환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⁸⁾ 오랜 세월에 걸쳐 문화적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유적, 아름다운 건조물 등의 문화환경도 환경권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⁹⁾ 환경권의 보호영역에 사회적·문화적 환경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타당하다.

대법원도 환경이익의 침해와 관련된 판결에서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폐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¹⁰⁾고 판시하여 환경 개념을 종교적 환경을 비롯한 사회적 환경으로 넓게 보고 있다.

2. 환경권의 법적 성격

환경문제는 여러 사회영역에 걸쳐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환경권도 그 법적 성격을 자유권 또는 사회권으로 일원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기존 기본권과의 관계에서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권의 특성에 주목하여 그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한 접근방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주요 견해들을 살펴보면 첫째, 자유권적 기본권설은 환경권의 침해로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현

6) 헌법재판소 2013. 10. 24.자 2012헌바431 결정.

7) 이덕연, “환경정의 개념의 외연과 내포—헌법해석론 및 환경법적 함의”, *환경법연구* 제35권 2호(한국환경법학회, 2013), 141면.

8) 법제처, 「헌법주석서 Ⅱ」, 2010, 385면.

9) 이상만, “헌법상 환경권의 보장범위에 대한 연구”, *원광법학*, 제29권 제4호, 2013, 203면.

10)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법상 규정만으로 환경권 침해의 예방과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방어적 청구권을 통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과 같은 성격으로 이해하는 학설이다.¹¹⁾ 이 학설은 헌법 제35조를 비롯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 실책임과 연대책임, 제43조의 피해구제, 그리고 민법 제205조와 제206조의 점유권적 청구권,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등의 규정에 따라 국민이 환경권의 침해자에게 환경권침해의 방지를 청구할 수 있는 방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하는 구체적 권리로 보고 있다.¹²⁾

둘째, 사회적 기본권설은 환경권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으로 이해하면서 사회적 기본권의 자유권적 측면을 인정하려는 학설이다.¹³⁾ 이 학설은 환경권은 사회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침해에 대한 소극적 권리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유를 전제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환경적 조건을 창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 보고 있다.¹⁴⁾

셋째, 종합적 기본권설은 환경권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그 이념적 기초로 하면서 여러 가지 성격을 아울러 가진 종합적 기본권으로서 환경에 대한 침해를 예방·배제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있다.¹⁵⁾

넷째, 종합적 기본권설은 환경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조건으로서 그 성질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환경권의 법적 성격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고 종합적 기본권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학설이다.¹⁶⁾ 이 학설은 환경권은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양면성을 가지며, 특히 객관적 가치질서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환경정책을 위하여 법률제도의 정비를 헌법이 직접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장의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¹⁷⁾

11) 정극원, 헌법체계상 환경권의 보장, *헌법학연구*, 제15권 제2호, 2009, 411~412면; 조종현, 환경권의 민사법리, 김형배교수화갑기념논문집『채권법에 있어서의 자유와 책임』, 박영사, 1994, 677면; 조은래, 환경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비교법학*, 제11권, 2000, 173~217면.

12) 조종현, 앞의 논문, 677면; 조은래, 앞의 논문, 173~217면.

13) 김철수,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1223면; 홍성방, 앞의 책, 299면; 정극원, *헌법국가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6, 350면.

14) 최윤철, 우리 헌법에서의 환경권조항의 의미: 기본권 보장 또는 환경보호, *환경법연구*, 제27권 제2호, 2005, 380면.

1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697~698면.

1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8, 461면.

한편,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3인의 의견으로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바, 환경권은 그 자체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¹⁸⁾ 대법원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헌법 제33조도 거의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수돗물의 질을 의심하여 수돗물을 마시기를 꺼린다면 국가로서는 수돗물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와 같은 의심이 제거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만일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나 의심이 단시일내에 해소되기 어렵다면 국민으로 하여금 다른 음료수를 선택하여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¹⁹⁾ 이러한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환경권을 종합적 기본권으로 보고 있는 반면, 대법원은 환경권을 구체적 권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목표규정 내지 국가의 책무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여러 학설들은 대법원의 입장과 달리, 환경침해의 예방·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는데 공통점을 보이고 있는데, 환경권의 실질적 보장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환경은 전통적인 자유의 영역이나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요소와는 차이가 있으며,²⁰⁾ 환경권 조항은 다른 기본권과 달리 국가와 더불어 국민을 수범자로 규정하고 있고²¹⁾ 환경권은 다른 기본권의 전제요소로서 폭넓게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자유권이나 사회권과 구별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7) 이승우, 헌법학, 도서출판 두남, 2009, 671면.

18) 헌법재판소 2008. 7. 31.자 2006헌마711 결정.

19)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20) 김형성, 앞의 논문, 120면; 정극원, 앞의 논문, 403면.

21) 김형성, 앞의 논문, 120면.

III. 헌법상 환경권과 경제의 관계

1. 환경권과 헌법상 경제질서

헌법상 경제질서는 국가와 경제의 관계에 대한 헌법적 판단으로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지침으로 작용한다. 물론 헌법상 경제질서와 현실의 경제질서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떠한 사회모델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통해 경제영역에 대한 법적 질서를 확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소득의 분배, 독점금지 등을 표방하는 헌법상 경제질서가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를 상정하기 쉽지 않으며, 재산권,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기본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 즉 환경권의 보장을 위하여 기업의 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 기업은 재산권 등과 더불어 헌법상 경제질서의 위반을 주장할 수 있으나, 기본권 제한이 합헌으로 판단되면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²²⁾

그런데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과 같은 환경·경제의 통합 개념은 환경권과 더불어 헌법상 경제질서를 구체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세대의 후손들이 그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우리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²³⁾ 경제질서의 측면에서 이러한 개념을 수용하게 되면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른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의 외연을 동시대의 국민 상호간에서 현 세대와 미래세대 상호간의 관계로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권과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조화적 해석은 결국 환경권과 경제적 기본권의 갈등을 해소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다.

22) 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4헌마536 결정. 동 판결에서도 청구인인 기업이 헌법상 경제질서의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현재는 기본권 제한의 방식이나 한계를 준수하고 있음을 이유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23) WCED, *Our Common Future*, 1987, Chapter 2 :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2. 환경권과 재산권

우리 헌법상 재산권은 법률에 의하여 그 내용과 한계가 정해지고 이를 행사함에 있어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이러한 재산권의 공공복리적 합의무 즉, 사회적 기속성은 그 대상이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기능이 클수록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특히 토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에,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함께 다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²⁴⁾

이러한 토지의 사회적 기속성으로 인해 토양오염 관련 법률이 환경권과 재산권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분야로 등장하게 된다. 오염매체의 측면에서 대기·수질 등과 달리 토지는 대표적인 재산권의 객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용·수익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그만큼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토지의 사회적 기속성을 근거로 환경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 토지재산권 제한에 매우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한 소유자도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며,²⁵⁾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그 구 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원칙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개발제한구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²⁶⁾

그러나 환경권 보장 및 토지의 사회적 기속성을 근거로 한 토지재산권의 제한도 비례의 원칙 및 본질내용침해금지를 준수하는 한계 내에서 인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

24) 헌법재판소 1998. 12. 24.자 89헌마214 결정; 헌법재판소 1989. 12. 22.자 88헌가13 결정.

25) 헌법재판소 2010. 5. 27.자 2007헌바53 결정.

26) 헌법재판소 2007. 8. 30.자 2006헌바9 결정.

한 측면에서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폐적한 도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토지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구역지정 후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토지를 전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²⁷⁾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경권 보장을 위한 법률규정의 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또 다른 사례로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로 확장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1호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을 들 수 있다. 동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그 책임의 범위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시가 범위 내로 제한하거나 일반적인 책임한도제를 도입하는 등으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²⁸⁾

이와 같이 재산권은 상대적으로 환경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본권에 해당하지만, 환경권과 재산권이 언제나 갈등관계에만 놓이는 것은 아니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환경오염 행위로 인해 환경권과 재산권이 동시에 침해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환경권과 재산권을 함께 주장함으로써 기본권 보장 효과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류지역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중·하류 지역의 농지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농지의 소유자는 환경권을 주장하여 토양오염의 배제·예방을 청구함과 동시에, 농산물의 수확량 또는 판매량 감소 등을 이유로 재산권을 주장함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환경권과 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힘입어 그 범위가 가장 급격히 확대되어 왔다. 산업의 다양화·복잡화로 인해 많은 직업들이 나타났으며, 글로벌 경쟁 하에서 고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한 에너지·U헬스·로봇 등이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추세는 점차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자유를 직업

27) 헌법재판소 1998. 12. 24.자 89헌마214 결정.

28) 헌법재판소 2012. 8. 23.자 2010헌바167 결정.

의 자유의 일종으로 보는 다수의 견해를 인정한다면, 직업의 자유가 가장 핵심적인 경제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보호영역의 측면에서 오늘날 직업의 자유는 선택의 문제 보다 그 행사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직업행사의 자유는 직업적 활동의 장소·기간·형태·수단 등의 광범위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한에 대하여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직업행사의 자유가 산업적 활동과 연계되면 필연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바로 이 지점에서 환경권과 직업의 자유의 충돌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환경권 보장을 목적으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배출시설규제제도'를 들 수 있다. 배출시설은 전체 생산시설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면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배출시설 설치 이후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생산공정 또한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출시설규제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강도 높게 제한하는 환경규제 수단에 해당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진동·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도록 정부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수단들 중 허가제가 가장 강력한 형태의 규제로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을 근간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개별 환경법률에서 허가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출시설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종래의 학설은 허가의 법적 성질을 명령적·기속적 행위로 보고 있는데, 환경영역의 경우 허가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그 법적 성질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²⁹⁾ 배출시설허가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수단에 해당하지만, 환경권 보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허가취득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잠재적 환경위험이

29)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1, 249면; 천병태·김명길, 환경법, 삼영사, 2000, 179면; 함태성, 환경행정 상의 규제수단에 대한 법적 고찰, 카톨릭법학, 제1호, 2003, 273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거부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현법재판소도 배출시설규제에 따른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은 합헌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환경보전의 목적의 달성을 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며, 원칙적 승인 의무에 대한 예외로서 신고의무로 그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³⁰⁾

IV.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환경규제를 통한 재산권,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이는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경제성장을 위한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있다는 성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환경보호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경제시스템이 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여건상 경제성장 또한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므로, 생존을 위한 조건으로서 환경보호와 더불어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냉엄한 현실이다. 따라서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 상호간의 사회경제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위한 전제조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환경규제에 대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강화

환경권은 그 구체적 내용이 입법을 통해 확정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국민의 의사가 국회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하

30) 현법재판소 2014. 7. 24.자 2012헌바437 결정.

여 특히 절차적 민주주의 요소들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³¹⁾

환경문제에 대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강화는 친환경적 경제성장의 측면에서도 상이 하지만 연관성이 있는 사회적 목표들을 통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련될 뿐만 아니라 고도의 기술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의 일방적 결정만으로는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렵고, 전문가나 소수의 집단이 그 결정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관점을 충분히 대변할 수 없다.³²⁾ 그리고 평등의 관점에서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 투명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공중참여제도'³³⁾를 활성화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데, 환경정보, 환경지표, 환경규제 등의 정보에 관한 접근성을 높이고, 환경규제에 대한 정책적 논의과정에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오염에 대한 일반 국민의 감시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소송제도'의 도입도 사법적 과정에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등에서 시민소송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시민에게도 원격적격을 인정하고 있다.³⁴⁾ 이러한 시민소송제도는 환경단체를 통한 환경감시 행위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31) 리우선언의 원칙 10은 “환경문제는 적절한 수준의 모든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어진다. 국가차원에서 각 개인은 지역사회에서의 유해물질과 처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적절히 접근하고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각국은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인식과 참여를 촉진하고 증진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문제에 대한 절차적 민주주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32) 김은주,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법상 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8집 제3호, 2010, 265면.

33) 환경법상 공공참여와 관련하여 ‘알후스 협약’이 일반적인 국제환경협약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정보에 대한 접근(Access to Information), 결정과정에의 접근(Access to Process), 사법적 판단에의 접근(Access to Justice)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병천, 환경법상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소송제도에 대한 담론, 환경법연구, 제27권 제1호, 2005, 146~147면 참조.

34) 소병천, 앞의 논문, 138면 이하.

2. 개발허가와 환경허가의 통합

토지·하천 등을 대상으로 한 개발행위는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를 행사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환경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경권과 경제적 기본권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의하면 건축·토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발허가³⁵⁾를 취득하여야 하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즉, 환경허가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허가는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허가는 단순히 자연적 자유의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자유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행위로 이해되고 있다.³⁶⁾

개발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일반적 의미의 허가는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통설적인 입장이지만, 공익을 고려하여 합당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그 일탈·남용이 있을 때 사법적으로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³⁷⁾ 대법원 판례도 토지의 형질변경³⁸⁾이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³⁹⁾ 등과 같은 전형적인 개발허가를 재량행위로 보고 있다.

위와 같은 현행법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토지·하천의 주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개발허가와 더불어 환경허가를 모두 취득하여야 하는데, 허가 기준 및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개발을 둘러싼 경제적·환경적 측면이 조화롭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 환경의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과 환경 관련 법률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35) 법문에서는 “개발행위의 허가”로 표현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개발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36)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7, 282면; 김철용, 행정법 I, 박영사, 2007, 192면; 박윤흔, 행정법강의 (상), 박영사, 2004, 343면;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5, 227면.

37) 정희근, 개발행위허가제에 관한 소고, 토지공법연구, 제38집, 2007, 163면.

38)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

39)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있다. 또한 환경허가와 개발허가의 법적 성질을 공통적으로 재량행위라고 본다면, 행정청의 협조 또는 일원화를 통해 허가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토계획법과 환경법의 목적과 체계, 소관 행정청, 허가에 대한 국민적 인식 등에 있어 개발허가와 환경허가는 차이점을 지니고 있으나,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위한 실효적·효율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의 가능성성이 높은 허가제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허가절차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형식적 통합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허가 범위 및 기준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실체적 통합을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환경법제와 에너지법제의 정합성 제고

일반적으로 환경과 에너지는 갈등 및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⁴⁰⁾은 597.9백만톤 CO₂eq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85.7%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가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환경은 경제·산업에 대한 규제적 요인으로 이해되는 반면, 에너지는 경제·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이해되는 점에서 근본적 인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표출된 현상에 대한 단편적 시각에 불과하고,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환경과 에너지의 관계를 종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방지 및 복원 등의 환경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에너지 분야도 '에너지혁명론'⁴¹⁾을 바탕으로

40)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13, 3면.

41) 제레미 러프킨(안진환 역), 3차 산업혁명. 민음사, 2012. 러프킨이 주장하는 '3차 산업혁명'은 i) 재생 가능에너지로 전환, ii) 건물 단위 미니발전소, iii) 건물 단위 에너지저장장치, iv) 에너지 공유 네트워크, v) 연료전지 차량 등을 5대 요소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에너지혁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미래의 국가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⁴²⁾ · EU ·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단기적으로 천연가스의 활용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폐기물에너지 등과 같이 이미 환경과 에너지가 결합된 기술 및 비즈니스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즉 환경과 에너지는 융합·협력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한 법제적 대응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우려된다. 환경 분야의 대표적 법률인 환경영책기본법을 살펴보면, 제10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자원의 순환적 사용,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개발·보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령이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위임되어 있다.⁴³⁾

이러한 법제적 문제는 에너지 분야의 법률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에너지 분야의 대표적 법률인 「에너지법」에서는 제1조에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的 수립을 그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중 환경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1조 및 제27조도 선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환경과 에너지의 사회경제적 관계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관련 법제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1조에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

42) 미국은 세일가스 생산이 2000년대 후반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하고, 전력발전을 위한 석탄소비가 감소하면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문진영 · 이성희, 최근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제14권 제6호, 2014, 13면.

43)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에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자동차의 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과 평균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제2조 제2호에서 녹색성장을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환경과 에너지 나아가 경제에 대한 통합적 고려라는 점에서 매우 타당한 접근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환경과 에너지의 관계 변화에 대한 전망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 및 에너지 분야의 관련 규정들이 실제적인 규범력을 지닐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개발 및 수급 구조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IV. 결 론

환경과 경제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논의가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규범적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우려된다. 배출권거래제, 통합환경관리 등의 논의에서 환경과 경제에 대한 종합적 고려의 단면을 읽을 수 있으나, 환경보호시스템과 경제성장시스템의 융합을 통한 친환경적 경제질서의 형성은 아직까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독자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은 자연환경에 국한하여 좁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환경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권과 경제적 기본권을 조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규제에 대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고, 개발허가와 환경허가의 통합은 환경권과 경제적 기본권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종체적 고려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친환경적 경제질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

환경과 경제는 공통적으로 체계적 순환성을 내포하고 있다. 각기 다른 원리에 의해

순환하고 있는 양자의 연계고리를 발견할 수 있다면, 사회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와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
|---|
| 논문투고일 : 2014. 10. 31. 심사일 : 2014. 11. 22. 개재확정일 : 2014. 11. 27. |
|---|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7
- 김은주,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법상 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8집 제3호, 2010.
- 김철수,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 김철용, 『행정법 I』, 박영사, 2007.
- 김형성, “현법상 환경규정의 규범적 의의”, 「환경법연구」, 제26권 제4호, 2004.
- 문진영·이성희, “최근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제14권 제6호, 2014.
- 박윤흔, 『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4.
- 박진완, “환경권과 자연보호–환경기본권의 기본권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검토”, 「환경 법연구」, 제30권 제3호, 2008.
- 법제처, 『헌법주석서 II』, 2010.
-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5.
- 소병천, “환경법상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소송제도에 대한 담론”, 「환경법연구」, 제27권 제1호, 2005.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13.
- 이덕연, “환경정의 개념의 외연과 내포: 헌법해석론 및 환경법적 함의”, 「환경법연구」, 제35권 제2호, 2013.
- 이상만, “헌법상 환경권의 보장범위에 대한 연구”, 「원광법학」, 제29권 제4호, 2013.
- 이승우, 『헌법학』, 도서출판 두남, 2009.
- 정극원, “헌법체계상 환경권의 보장”, 「헌법학연구」, 제15권 제2호, 2009.
- 정희근, “개발행위허가제에 관한 소고”, 「토지공법연구」, 제38집, 2007.
- 제레미 러프킨(안진환 역), 『3차 산업혁명』, 민음사, 2012.
- 조은래, “환경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비교법학」, 제11권, 2000.
- 조종현, “환경권의 민사법리, 채권법에 있어서의 자유와 책임”, 김형배교수화갑기념논

- 문집 『채권법에 있어서의 자유와 책임』, 박영사, 1994.
- 천병태·김명길, 『환경법』, 삼영사, 2000.
- 최윤철, “우리 헌법에서의 환경권조항의 의미: 기본권 보장 또는 환경보호”, 「환경법 연구」, 제27권 제2호, 2005.
- 함태성, “환경행정상의 규제수단에 대한 법적 고찰”, 「카톨릭법학」, 제1호, 2003.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8.
- 홍성방, 『헌법학(중)』, 박영사, 2010.
-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1.

- Bryan G. Norton, “Environmental Ethics and Weak Anthropocentrism”,
Environmental Ethics, vol. 6, 1984.
- Christopher D. Stone, “Should Trees Have Standing? Toward Legal Rights for
Natural Objects”, *S. California Law Review*, vol. 45, 1972.
- E-W. Bockenforde, “Die sozialen Grundrechte im Verfassungsgefüge”, in:
Bockenforde/ Jekewitz/ Ramm (Hrsg.), *Soziale Grundrechte*, 1981.
- Joseph L. Sax, “The Public Trust Doctrine in Natural Resource Law: Effective
Judicial Intervention”, *Michigan Law Review*, vol. 68, 1970.
- K.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RD, 21. Aufl., Heidelberg 1990.
- Nicholas Stern, *Stern Review: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 WCED, *Our Common Future*, Chapter 2 :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1987.

[Abstract]

Constitutional Study on the Function of Environmental Rights
and Economic Growth

Lee, Chang Hoon

(Senior Researcher,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in SKKU)

As stipulated in Article 9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Integrated Consideration of Environment and Economic' should be premised for reasonable and sustainabl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However, while the social discussion on environment and economy shows substantial progress, active response in normative aspects including environment-related laws is shown to be insufficient.

In order to improve this, active construction of judicial theories and judicial interpretations are required to be developed around the relation between environment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and economy. First, at a fundamental level, environmental rights as independent fundamental rights should not be understood narrowly confining it to the natural environment but should be viewed as a wide concept which includes social/cultural environments. In addition, the examples where environmental rights and economic fundamental rights are conflicting with each other should be reviewed, and the direction to alleviate the strained relation should be derived.

In this study, the normative prerequisites for environment-friendly economic growth are presented as follows on the basis of the above study results. First, the participation of general people in environmental problems should be actively induced by reinforcing procedural democracy for environmental regulation. Second, the permissions related to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should be integrated to provide a chance to harmoniously guarantee environmental rights and economic fundamental rights. If such

normative prerequisites can be judicially/institutionally realized, it is expected that we can discover new chances and a driving force for social advancement by forming a virtuous loop of environment and economy.

주 제 어 환경권, 헌법상 경제질서, 재산권, 직업의 자유, 친환경적 경제성장
Key Words environmental right, economic order in constitution, property right, occupation freedom, eco-friendly economic growth